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

-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1)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국문 요약〉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독립운동선언 기념일에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군정 당국과 군정경찰의 무차별 사격과 고문치사 등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한 전도민 파업과 이에 대한 재차 탄압에 항의하고 민족분단 반대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다는 명분의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에 대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군경의 강경무력진압과 인간인 비전투원 대량집단살상사건으로 제주4·3항쟁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추진, 특별자치도 시행과 같은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의 역사적 원류로서 제주4·3항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주4·3항쟁의 인권정신은 생명권과 생존권, 자유와 권리의 쟁취에 있고, 평화정신은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자주와 자립, 공동체정신을 골간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제주4.3민중항쟁, 인권정신, 평화정신, 과거청산, 국가폭력, 갈등 해결

1. 문제의식

오늘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물음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1) 이 글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관·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주최 세계평화의섬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2006. 1. 27). 발표 기회를 제공한 양길현 교수와 토론을 해 준 권귀숙 교수에게 감사 드린다.

가라는 미래상을 궁리해 보는 일은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 제주섬은 안팎으로 중대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과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와 대통령의 사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이 모두는 제주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불가피한 개입과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단지 정치적 차원이나 경제적 수준에서 그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행정체계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고찰하려면 제주4·3민중항쟁은 무엇인가라는 역사적 성격부터 규명하고 검토해야 한다. 왜 2006년의 시점에서 제주4·3민중항쟁을 재검토해야 하는가. 원래 체제 이행기의 과거청산의 길은 진실규명과 사회정의 실현의 방식과 진실규명과 화해의 방식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종종 후자의 진실-화해의 방식으로 과거청산을 종결지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법률적 정의로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민간인피살사건에 항의한 제주도민과업에 대한 강경유혈진압과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군경토벌대의 초강경 대살륙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의미한다(제민일보사, 1995-1999; 김종민, 1999; 제주4·3연구소, 2000, 2001, 2002;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2003). 그래서 법률상의 규정으로 볼 때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봉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 민간인피살사건 이후 가중되는 탄압에 맞선 제주 섬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과 그로 인한 억울한 희생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허상수, 2003a, b). 제주4·3사건을 그 자체에 국한한다면 무장봉기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메릴, 1988). 이와 같은 사건 정의는 수난사적 과정과 정부의 시혜적 사건과는 조화할 것이

거나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과거청산 절차와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개발독재치하에서 인권 부재의 정치문화가 낳은 후진성의 반영이며, 이 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정치권내 보수적 정당 입법자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거나 과거청산을 위한 단계론적 접근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 이후 정부의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전모의 일단이 들추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위해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진상조사보고서 결론으로부터 이 사건의 성격 규명이 새롭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이 사건은 발생하였는가?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강요하였는가? 그리하여 가해자는 무엇을 얻고, 피해자는 무엇을 잃고 말았는가?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보았는가? 국가는 왜 이렇게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집단살해를 저질렀는가? 근대국가는 과연 반인륜범죄를 자행할 만큼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며 몰가치한 반역사적이며 비민주주의적 존재인가?

잠정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서 제주4·3사건은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닌다고 상정한다(허상수, 1988, 1996, 2004; 강성현, 2002; Berghe, 1990). 이런 성격규정으로부터 제주섬에서 인권과 평화논의는 출발할 수 있다(허상수, 2005). 전쟁이 끝난 8·15이후의 정치권력과 민중의 충돌을 일련의 정치폭력으로 환원하여 살펴 볼 수 있다(박종성, 2001).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은 근대국가 발생조건의 하나를 구성한다(기든스, 1985).

2.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

20세기는 학살과 폭력의 세기였다(아렌트, 1999). 21세기는 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인권과 생태의 세기이다(허상수 외, 2005). 인권과 평화는 상대가 있는 관계적 개념이다. 인권과 평화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이 존립할 수 있는 관계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평화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김승국, 1996). 평화는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윤리적 행동의 지침을 제시할 만큼 최소한 네가지 공리, 즉 폭력의 금지, 진실성(기만의 금지), 신뢰 및 공개성(과다한 비밀의 금지)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도덕적 설교나 가르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화는 전통적 의미에서 전쟁의 예방과 중지, 전쟁 기구의 해체, 군비 축소, 전쟁원인의 제거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 평화는 사회적 불의, 빈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와 수탈, 환경 파괴, 성차별, 인종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정진홍 외, 2000). 이런 것이 실현되지 못할 때 그것은 평화가 아닌 나쁜 발전(maldevelop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수가타 다스굽타). 적극적 평화는 인권 신장이나 교육 받을 기회의 평등과도 깊이 관련을 맺는다. 요한 갈통은 나쁜 정치와 사회제도, 불평등한 경제, 잘못된 관습과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구조적 폭력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 인권 옹호와 확대,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갈통, 2000).

제3세계 해방신학을 주도한 돔 헬더 까마라 주교는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 1 폭력은 모든 폭력의 원천이자 시발점이 되는 폭력이다. 제 2의 폭력은 이 폭력의 원천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나는 폭력이다. 제 3의 폭력은 제 2의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으로 이른바 파시스트의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악순환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까마라 주교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로운 폭력'을 제안한다(정진홍 외, 2000). 이미 십자군 시절에도 '정의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가 시도되었다. 까마라 주교의 폭력에 대한 초스는 보통의 수단과 방법

으로는 부분적인 개량이나 수정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구조에 대한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전면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고문과 살해 위협, 백색테러에 대한 저항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국주의세력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시바초프, 1989; 촛스키, 1985).

2006년의 시점에서 볼 때 제주4·3사건은 단순히 '폭도들의 반란'이 아니었다(양한권, 1988).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비전투원들이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허상수, 2004). 적어도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많은 도민들은 무장봉기에 대해 지지와 묵시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중항쟁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국토 양단이나 민족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좌파모험주의의 혐의를 벗기기는 쉽지 않지만 1847년 당시 제주도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여론은 통일국가 건설과 외세배격에 있었고 이를 파탄시켜 내리는 지배진영에 항거하는 세력을 성원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들 항쟁의 주체들은 폭정에 항거한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민들이 과연 '항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사람'들도 가해자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다층적 복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위되어 왔던 피해 진상뿐만 아니라 은폐와 침묵을 반복해 왔던 가해진상 규명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²⁾.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 육군 중장 하지는 5.10 남한단독선거 실시를 위한 자유 분위기 보장에 관한 유엔위원단의 권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1948년 4월 5일, 11개항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판 권리장전'이라고 평가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용중, 1990: 139-140):

2) 한국 현대사의 기층을 이루는 민중생활의 이해를 위해서 구술사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학계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Thompson, 1988)

법 앞의 평등과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인신·주거·문서·재산을 보호할 권리, 생명의 자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언론·출판 등 모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

그러나 제주섬에는 아직 이런 근대적 의미의 인권선언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인권관련 포고령이 발표된 시기는 제주도에서 경찰서 습격과 경관 살해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2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대였다.

이 사건에 개입한 국가폭력, 국가테러, 국가범죄의 주체는 미군정당국과 미 육군,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중무장한 정부군과 주요 군사 지휘관, 중무장한 경찰과 국가권력의 불법 지원을 받은 사설임의단체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48년 강경진압의 법적 근거인 계엄령조차 관련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된 불법 조치라는 것이다(김순태, 1999). 따라서 이들 기관과 주요대표자들은 반인륜범죄를 자행하고 민간인들을 대량살해한 가해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없다. 적어도 이 시기 미 행정부와 육군, 현지 점령부대의 행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현기영, 1994; 허호준, 2002, 2003). 이밖에 무모한 군사행동을 주도한 좌익계 무장대 대표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직접적 폭력의 자행, 구조적 폭력의 행사, 수평적 폭력의 교환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백성들에 의한 '수평적 폭력'에 주목한다. 식민주의자들은 배후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단지 식민지 피식민층에 의해 그들 사이에 수평적 폭력이 반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올바른 명칭을 통해 그 사건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즉 제주4·3사건은 다음과 같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재조선 미군정 당국과 중무장 미군은 1947년 3월 1일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평화적 집회와 시위 직후 군중들이 해산할 무렵 동원되지 않은 일반 관중에게 재조선 미군정경찰이 무단 발포하여 인명치사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이 처리과정에서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여 13개월 동안 민간인 불법 구금과 고문 치사 등 일부 경찰·서북청년회의 무자비한 탄압을 지휘·지원·묵인하고, 이 폭정과 탄압에 대하여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을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일부 집단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미군정과 대한민국 군경 토벌대는 평화적 해결과 수습 기회를 무시하고 오로지 강경무력 진압과 초토화작전을 지휘, 집행함으로써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집단살해하고, '합정수사'와 함께 이들을 불법 처형을 하는 등 인도에 대한 범죄 방지 등 국제인권조약과 미국 수정헌법,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침해한 사건"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단선단정 거부와 통일국가를 위한 민중항쟁에 대한 군경의 유혈적 토벌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함으로써 법률과 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올바른 명칭은 '제주4·3민중항쟁'이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쌍방은 평화를 실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력을 부르며 자신들의 정치 사회적 입지 확보와 의지 관철을 위한 억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중들은 불가피한 항거, 또는 절망적인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과를 들어 보면 이들 사이에는 대살륙을 피할 다섯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47년 3월 총파업이후, 1948년 4월말 평화회담과 휴전 합의이후,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말 불법 계엄령 해제이후, 1949년 가을 등. 그런데 이때마다 선무공작 등 온건론의 개진 보다는 강경론, 확전론, 무력 진압론이 미군정과 한국 정부군내에서 득세하게 되면서 평화의 기회와 유화적 해결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지배블럭의 폭력적 처리방식은 정당성을 결여한 무리한 집권 야욕, 무모한 체제이행, 미 제국주의체제의 세계전략의 연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산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장대를 구성하는 군사행동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1948년 4월말의 평화회담에 응하고 휴전 합의에 동의한 것을 보면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이들은 폭력을 통한 문제 처리를 강요당해 온 측면이 더 클 수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군사부의 투쟁노선이 채택되기 전까지 대다수 당원들은 무장투쟁노선이 가져 올 효과와 파급력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논란을 반복해 왔을 것이다(양정심, 1995). 더욱이 당 중앙과의 연계, 전국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군사노선은 돌출행동이거나 모험주의라는 점에서 그들간의 노선투쟁에서 내부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방선주 외, 1991; 서중석, 1999).

전국 차원에서 볼 때 1948년 2월 투쟁 이후 제주지역의 정세 흐름은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Cummings, 1998). 본토와의 지리적 격차, 인민위원회와 같은 자치조직의 영향력, 3월총파업 이후 미군정과의 대치와 긴장상황, 양분된 정치노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은 민족분단과 남한정부 수립이 일정에 오르면서 군사행동 이외의 다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엄정한 사실 이해가 필요하다(최상룡, 1988; 송광성, 1993; 한용원, 1993; Mead, 1950).

제주4·3민중항쟁은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자기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해방정국에 제주사회에 형성된 여러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띤 것이다. 이는 제주4·3무장봉기가 남로당 중앙당이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무장봉기 발발초기 응원경찰대와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한 진압작전이 제주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음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민간희생을 가져 온 국가범죄를 통하여 당시 지배블럭은 '1948년 체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해 극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이 1948년 체제는 반공우익사회체제의 성립과 철저한 관철을 실현한다. 이 사회체제는 공산주의 반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근대사

회의 덕목인 민주적 절차와 다원성을 파괴하며, 자유주의를 허구화했으며, 정치적 개성을 박멸하였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는 발 디딜 틈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제헌헌법의 화려한 수사는 단지 법적 형식과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국제화하는 정치적 기원을 마련했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군사적 물리력의 종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종속, 소비사회의 부식, 친미교육의 강화, 전통문화와 종교를 배타시 하고 병영적 생활양식을 보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주지하고 있듯이 평화적 정권이양과 신헌법 제정을 통해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체제'나 과거청산의지의 실천과 같은 정치개혁을 가져온 '2004년 체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 '1948년 체제'는 여전히 강고하고 의연하게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규범으로 남아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큰 전쟁'의 발발은 1948년 체제의 수호와 부정을 둘러싼 쟁투의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1948년 체제는 서로를 불신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감시사회를 낳았다. 그 사회는 감시의 일상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진부화, 인권에 대한 무감각, 평화에 대한 불감증, 생명의식의 결여상태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병든 사회는 시류의 정체, 무기력, 공포의 사회화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득세를 온존하게 만들었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이어서 이런 정치적 결빙을 헤집고 나오는 새로운 세대의 다이내믹(dynamics)의 폭발은 1948년 체제의 해체 여부에 따라 그 생명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체제의 해체를 상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일 것이다(허상수, 2003).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이들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유린사태에 직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생명권, 법 앞의 인격으로서 승인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학·비

인도적이거나 체면을 더럽히는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죄수의 권리, 이동의 자유,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를 빼앗긴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 결혼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에 관한 권리, 아동의 여러 권리, 명예·신용 및 사생활의 보호, 주거와 통신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의견·표현·정보 및 전달의 자유, 정치적 활동 및 노동단체활동의 보호,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 경제적 활동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자유의 침해와 유린.

따라서 제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은 첫째 생명권의 신장에 두어져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 바탕을 구성하며 어떤 경우에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 중요한 권리에 정면 배치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사형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사형을 법정형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형사에 관한 기본법률인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서 80여개에 이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형을 법정형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5-6개정도이고, 2000년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73개국, 사형제도는 있으나 선고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22개국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적 추세이다.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둘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신장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항권의 확립에 있다. 불의한 국가권력의 횡포와 억압에 대해서 다른 해결방법이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그 불법행위에 저항할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범죄·국가폭력, 예를 들면 집단살해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최고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와 예외를 구하는 특별입법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강금실, 2000).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의 길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 그리고 명예회복과 같은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제 과거청산에 대한 진상규명·화해모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과연 제주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통 당시 일을 겪었던 체험자들은 가족사의 지평에 갇혀 있어서 토벌대와 무장대, 이를 둘러싼 세력들의 폭력교환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시대정신의 한계나 역사의식의 빈곤, 사료나 정황의 부족은 미합중국과 군부, 이승만 정권, 토벌 지휘부의 국가폭력을 확증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실이 감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전상태의 성격 규명문제에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제주4·3민중항쟁의 평화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 주체를 가려내고 이들의 고백과 사죄에 대한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길일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서의 관용과 용서는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다. 이런 관용과 용서의 필요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충분조건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고백과 사죄이다. 따라서 제주4·3민중항쟁의 평화정신은 민족분단에 반대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민족통합과 공동체 지향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전통문화로부터 평화담론을 재발견하고 복원하며 발굴해야 한다. 평화정신은 다른 생각의 공존, 미래지향의 정신이며 자율과 자치,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4·3민중항쟁은 집합기억을 통해 재현

3) 민간인 대량 살상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제노사이드, 정치적 제노사이드가 있고, 근대성과의 관련짓기도 한다(Bauman, 1989; Fein, 1990; Giddens, 1991; Harff and Gurr, 1988; Hur, 2001; Kuper, 1990; Jensen, 2003)

되며 민중항쟁론을 통해 기억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한다(권귀숙, 2001; 김영범, 1999, 2003; 휘버, 2003).

3.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현재 단계

제주섬은 냉전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강대국 정상들이 내도하여 화기에애한 회담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 회담이 개최될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남북한 인사들이 참여한 민족평화축전이 전도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바다에서도 물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15일 오후 9시 56분경 북한 남포선적 9000톤급 대동강호 등 2척이 제주해협을 진입하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20분경에 제주 해협을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8월10일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통과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정·보충합의서」의 채택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서 출항하여 북한으로 귀항하는 이른바 북·북항로에 대해서는 해운합의서 제7조에 근거하여 8월 10일 회담에서 북측선박의 운항비용 및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북측의 요구를, 우리측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항로대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거리로는 약 53해리 단축되며, 이는 12노트 항행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 25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동강호 등은 14일 오후 4시에 북한 남포항에서 소금, 발전설비 물자 등을 싣고 출항하여 제주해협을 통과 19일경에 청진항으로 입항하였다.

제주해협 통과시 해양경찰청에서는 안전호송경비를 실시하였으며, 경비함정과 북한화물선사이에 정기적인 무선교신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상호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하였다. 특히 광복60년을 맞아 북한선박이 정식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호송경비를 제주해협 제민1호(1500톤급)는 제주해협에서 북한 남포선적의 화물선 대

동강호와 교신이 이루어져 향후 제주해협이 '평화의 바닷길'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한편 제주해경이 북한선박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이처럼 세계 평화의 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중심(hub)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의 정립과 고취는 매우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를 구성할 것이다.

주위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사업은 흔치 않아 보인다. 평화공원사업은 사건의 성격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양만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관을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단계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은 형해화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이 없이 독비(獨碑) 하나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처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소한 발본적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가 각국에 수립을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안은 2003년 10월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중장기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토록 결정했다. 여기에는 반인도적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권고안이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1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애초 검토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⁵⁾.

그러나 당정은 민사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재확인해, 최종길 교수 사망,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수지 김 간첩조작 등 사건에 대한 배상의 길을 열었다(한겨레. 2006. 1. 19. 이지은 기자)⁶⁾.

공소시효의 배제 적용을 통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주사건과 같은 국가테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
- 5)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부, 국방부 등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회의를 열어, 공소시효가 지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당정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도 시효를 배제할 경우 같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가 '범행을 종료한 때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가해자 범위 또한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한 종전 법안 대신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군·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 6) 반인도적 범죄엔 '무한정' 공소시효, '국제형사규정 국내이행입법안' 입법예고. 2004. 4. 7.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2002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Crime)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 최근의 당정 논의는 국제 흐름에 비켜가는 것이다.

비극적 과거사를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은 분쟁과 갈등을 이완하고 해소하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오늘날 민중항쟁을 역사적으로 종결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가해 주체의 언행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해자의 고백은 폭력 청산의 첫걸음이다. 이런 고백철차를 거치지 않는 화해는 공허한 것이다. 주민들은 아직도 과거 사건을 '시국·사태·유사사'라는 식으로 기억한다. 이런 회상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단순히 개인사로만 치부하게 만들고 있다.

화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다. 비극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비극을 연출한 가해자들의 석고대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과거청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공동체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상생은 평화의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화해와 상생은 결코 걸치레로 끝나서는 안된다⁷⁾.

4.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미래상

존 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평화 구축(Building Peace)이라는 저서를 통해 어떤 특정 상황에서 평화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활동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Lederach, 1997). 역사적 사건을 평화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그 자체가 평화 구축 활동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난 2006년 4월 3일, 대통령의 제주 방문과 위령제 추도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세 가지 활동 층위는 풀뿌리단계, 중간단계, 상위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는 서로 다른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되고 다른 단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단계들 가운데 하나를 생략하거나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전체적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단계의 사업과 사람들은 증추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자나 장애물이 되어 평화 구축을 위한 일 전체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간디는 지적한다. 평화를 위한 전략 실현의 초기 과업은 전체적 변혁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들의 개인적 관계에서부터 폭력과 기만이 통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복, 1991: 218).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에서는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개인, 사회, 국가는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학습하고 전수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평화의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법을 연출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 폭력의 추방은 폭력의 수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Strange, 1974).

만에 하나 그런 길을 놓치거나 해매게 된다면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에 대한 논의는 무색무취한 형식으로 일회성 기념일 행사에 그치고 마는 방향으로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개인적 취향의 주관적 해석에 머무르거나 정치적 왜곡, 경제적 치부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면 희생자들을 한번 더 죽이는 것과 같은 몰염치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그것은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박제화하고 상품화하고 물신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참여 주체들의 양식이 더욱 윤리적,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옮김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강금실. 2000. 「민간인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외. 2000.
「전쟁과 인권: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심포지움 자료집.
- 강성현. 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정구. 2000. 「한국전쟁직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외(2000. 「전쟁과 인권: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심포지움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 앤쏘니 기든스. 1985/1993. 「민족 국가와 폭력」. 삼지원(*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 김순태. 1999. 「제주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김승국. 1996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Gewalt의 이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 4·3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발표문집.
- _____.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4·3과 5·18 문화운동. 5·18기념 국제회의 발표자료집.
- 김종민. 1999. 「4·3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 4·3연구소·한국역사학연구회 편 제주 4·3제50주년 기념 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간, 1999,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 메릴, 존 R.. 1988. 「침략인가 해방인가: 1948-1950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 과학과사 상사.

- 박종성. 2001.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해방 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방선주 외. 1991 『한국현대사와 美 軍政』.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씨셀라 북 박상섭 옮김 1991 『평화를 위한 전략』, 인간사랑.
- 서중석. 1999.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 송광성. 1993. 『미군 점령 4년사: 우리나라의 자주·민주·통일과 미국』. 한울.
- 하나 아렌트.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출판사.
- 시바초프, 야츠코프 / 미국사연구회 역, 1989. 『아메리카 제국주의사』. 국민도서
- 양정심. 1995.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한권. 1988.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홍 외 2000. 『새 천년 평화 개념의 정립을 위한 연구』. 새천년 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
- 제민일보사. 1995-1999. 『4·3은 말한다』. 전 5권, 전예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동위원회편
- <http://www.jeju43.go.kr> 자료실.
- 제주4·3연구소. 2000.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 _____. 2001. 『1960년 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II: 남제주군편』.
- _____.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
- 조현연. 2000. 『한국 현대 정치의 악몽-국가폭력』. 도서출판 책세상.
- 조용중. 1990.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나남
- 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하는 책.

- 주한 미 육군 주간정보요약.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자료집: 미군정보고서」, 215-217.
- 츨스키 외/임채정 역. 1985. 「미국의 제3 세계 침략정책」. 일월서각(Noam Chomsky and Edwards S. Herman(1973.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South End Press.
- 최갑수. 1992. 초대 박경훈 지사 부인 최갑수, 「제주, 제주인 향토무크 2」. 제주역사연구회. 77.
- 최상룡. 1988. 「미국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 푸코, 미셸. 이규현 역. 1990. 「성의 역사 1권 - 압의 의지」. 나남.
- 한용원. 1993.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 허상수. 1988. 「제주4·3민중항쟁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한양대학보.
- _____. 1996. 「제주4·3항쟁의 실체와 특별법 제정의 시대적 당위성: 왜 '제주4·3사건 관련자 등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가(부록 특별법 초안)」. 제주사회문제협의회.
- _____. 2003a. 정부보고서를 통해 본 제주4·3사건의 진상. 「제주4·3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주최 토론회자료집.
- _____. 2003b.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향후 제주4·3운동의 검토. 「제주4·3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연합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 _____. 2004. 「국가폭력과 제주4·3항쟁」. 폭력과 평화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 _____. 2005. 「올바른 과거청산의 방향 정립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과거사청산과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 재경제주4·3희생자 및

- 피해자유족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허호준. 2002.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 _____. 2003. 「미국의 책임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제주4·3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연합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 마리아 휘버. 2003. 「냉전의 뿌리: 히로시마에서 제주까지」, 제주4·3제55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학살·기억·평화: 4·3의 기억을 넘어”. (사)제주4·3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 현기영. 1994.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 비평사.
- 許尙秀. 2003. 「市民社會と民主主義そして 過去清算: 濟州四・三抗爭眞相糾明運動を 中心に」. 韓日比較公共論圈 Project. 日本立命館大 國際地域研究所.
- Bauman, Zygmunt.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Berghe, Pierre L. van den. 1990. "Introduction," in Pierre L. van den Berghe(ed.). *State Violence and Ethnicity*.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Cumings, Bruce. 1998.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in .Hur, Sang Soo, ed. 2001.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Ch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BaekSan Publisher Co.
- Fein, Helen. 1990. *Genocide: A Sociological Perspective*. Sage.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Press.

- Griffith, Robert. 1970. *The Politics of Fear: Joseph R. McCarthy and the Senate*.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하재룡 역. 1997. 「마녀사냥: 메카시/메카시즘」. 백산서당).
- Harff, Barbara and Ted Robert Gurr. 1988.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 and Politicid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 no. 3.
- Hur, Sang Soo, ed. 2001.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Ch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BaekSan Publisher Co.
- John Paul Lederach 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Kuper, Leo. 1990. "The Genocidal State: An Overview," in Pierre L. van den Berghe(ed.). *State Violence and Ethnicity*.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Jensen, L.B. 2003. *Genocide: Cases, Comparisons and Contemporary Debates*. The Danish Center for 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 Meade, Grant E. 1950. *American Government in Korea*, March.
- Sherman M. Strange, *Violatives: Modes and Themes of Violence*, Sherman M. Strange. eds.,(1974. *Reason and Violence: Philosophical Investigation*, Basil Blackwell.
- Thompson, P. 1988. *The Voice of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Spirits of Human Rights and Peace of Cheju
People's Struggle of 3rd, 1948: focusing the present
stage and future image of that**

Sang-Soo Hur

The Cheju Incident of April 3rd, 1948 can be redefined from the facts Jeju Islanders marched peacefully in the memorial ceremony of Independence Declaration Day of March 1st, 1947, then Military Ruling American Authorities in Korea and their military police in Jeju Eup(city) fired a few shot to the non-armoured masses indiscriminately, and some innocent civilian were killed, so most of the islanders took a general strike to protest the ruler's oppression, and then the brutal repression by the U.S. armoured force escalated to the wide range of the island such as arrested and tortured the protester, Cheju Popular Uprising of April 3rd, 1948 by the Cheju Chapter of the South Labor Party were erupted without any further support from the main land, after the sole legitimated government in South Korea was established, the forcefully and fiercely state violence and political genocide without any legal martial law were continued for the seven years lately, therefor we can called it, Cheju People's Struggle of 3rd, 1948.

Jeju-do(Province) confronted the changing period in the 21st century, namely, designation of Word Peace Isl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and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

Province. In this regards, Cheju People's Struggl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historical origins of future agendas. We can trace the Spirits of Human Rights and Peace of Cheju People's Struggle of 3rd, 1948 that is to say, the one are right to life, right to existence, and free and rights, the other are orientation against violence and war, peace loving and secure the self determination, self identity and self help of communit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rom the redress of Cheju Incident, so called clean-up of past, reparation and truth are necessary for social cohesion in this divided country.

Keywords : Cheju People's Struggle of April 3rd, 1948, Human Rights Sprit, Peace Sprit, Redress of Past, State Violence, Conflict Resolution